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13934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139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55118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C

변론종결 2021. 7. 22.

판결선고 2021. 9.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5511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34,331,25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4,331,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철, 판사 김흥준, 판사 김우수

별지